

인천공항교육협약체와의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인천공항교육협의체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

[제정일 2009.8.18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55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인천공항교육협의체와의 계약에 의한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항공경영학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천공항교육협의체”라 함은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에 참여한 인천국제공항공사, 공항상주 정부기관, 항공사, 공항 협력사, 기타 인천공항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업체를 말한다.
2. “재교육형 계약학과”라 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.

제3조(계약학과의 명칭·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) 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과정	명 칭	계약기관	입학정원	학위명	비고
일반 대학원	석사	항공경영학과	인천공항 교육협의체	80	경영학석사	재교육형 계약학과
	박사	항공경영학과		30	경영학박사	

제4조(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)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.

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실시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학점인정)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제6조(휴학) ① 계약학과 학생이 타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교육협의체의 승인 후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, 재학기간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복학) 휴학자의 복학은 복학 당해학기에 계약학과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

할 수 있다.

제8조(이수학점) ①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, 박사학위과정 36학점을 최저로 한다.

② 연구지도학점은 교과학점 이외에 지도교수 선정 때부터 매학기 2학점씩 과한다.

제9조(자격시험) ① 학생은 각 과정의 전공에 필요한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신입학 후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선정한다.

제10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시행세칙 제64조에 의한다.

제1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동 시행세칙(학사과정·대학원), 당해 학부 학사내규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